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98호 2015. 5. 12.(화)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2015-462호 2015/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98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5 - 462호

2015/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

우리시 2015/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5월 12일

사 천 시 장

1. 총 괄

어업별	개발방법	승인요청		승인		불승인	
		건수	면적(ha)	건수	면적(ha)	건수	면적(ha)
패류양식	재개발	2	15	2	15	-	-

2. 승인조건

- 가.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협의를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- 나.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- 다.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수면의 한계,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- 라.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업분쟁이 야기될 시에는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98호(3)

마.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※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
3. 2015/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

어업명칭	어업종류 (양식방법)	양식물	수위치	면적 (ha)	승인여부	도면번호	비고
패류양식	살포식	피조개	서포 비토	10	승인	1	사천양식 제5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
	투석식	굴	서포 내구	5	승인	2	사천양식 제6호 기간만료로 인한 재개발